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54 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 박충권·박수영·김성원

이인선 • 김상훈 • 박준태

김정재・김 건・최은석

윤재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AI, 빅데이터 등 디지털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환경이 도 대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은 점점 가속화되고 치열해지고 있음.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이러한 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업종별·직무별 상관없이 주 52시간(법정근로시간 40시간 + 연장근로시간 12시간)으로 운용되고 있음.

이러한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로는 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도 직결되는 연구개발(R&D) 분야에 있어서 업무수행 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움. 또한 근로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·전문직 등 기업의 핵심 인력의 경우 현행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함.

따라서 근로시간의 배분,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

구개발, 고소득·전문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.

미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지만,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, 관리직·전문직인 근로자가 직무요건 을 갖추거나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'화 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'를 운영하고 있음.

이에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,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근로자 선택에 맞춰 근로시간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(관리자), 대분류 2(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), 대분류 3(사무 종사자)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, 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도록 함(안 제6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3조의2(연구개발 업무 등 적용의 제외) 이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 게와 휴일, 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1.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
- 2.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(관리자), 대분류 2(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), 대분류 3(사무 종사자)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3조의2(연구개발 업무 등 적용의 제외) 이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, 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아니한다. 1.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2.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대분류 1(관리자), 대분류 2(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), 대분류 3(사무 종사자) 직업에종사하는 자가 「소득세법」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